

의안번호	제65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8월 2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1
----------	-----

제출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체 : 불임

6. 비용추계서 : 불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u>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1. (생략) 2. <u>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u> 3.·4.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u>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0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u> <u>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u> <u>②</u>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u><삭제></u>
<u>제3장 충청북도</u> <u>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u> <u><신설></u>	<u>제3장 충청북도</u> <u>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u>
<u>제10조 ~ 제19조</u> (생략)	<u>제11조 ~ 제20조</u> (현행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혜택을 부여해 도내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 조성

2. 비용 발생 요인

-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패, 인증서, 홍보비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패 등 소요예산
- 추계 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3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신규사업)	30	6	6	6	6	6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제작(도비)	12.5	2.5	2.5	2.5	2.5	2.5
홍보비 등(도비)	17.5	3.5	3.5	3.5	3.5	3.5